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6. 9. 1.>
수수료(제97조 관련)

구분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 · 우편민원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가. 신규		
1) 제4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의 경우	8,300원	9,300원
2) 1) 외의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의 경우	25,200원	28,000원
나. 변경		
1)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3,800원	26,500원
2)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영 제26조제1호, 이 규칙 제41조제3항제1호, 제43조의3제3항제1호 및 제94조제7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8,300원	9,300원
다. 조건부영업허가	25,200원	28,000원
라.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 다만,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5,200원	28,000원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2,000원	5,300원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다만, 제48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8,300원	9,300원
2. 지정 등 신청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신청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8,500,000원
2)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4,900,000원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신청(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및 인증사항의 변경신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	
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1) 신규신청		
가) 식품 원료 중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45,000,000원
나) 식품 원료 중 가)에 해당하지 않는 원료		3,000,000원
다)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포함한다), 기구 및 용기·포장		3,000,000원
2) 변경신청. 다만, 대표자, 업체명(기관명) 및 제조업체명(개발사명), 소재지, 원료명(품목명, 상품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300,000원
3. 조리사면허		
가. 신규 발급	4,900원	5,500원
나. 재발급	2,700원	3,000원
다. 조리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다만, 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800원	890원
4.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		
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각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1) 신규 설정		30,000,000원
2) 변경 및 설정면제		10,000,000원
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		
1) 농약(식품별로 부과한다)		5,000,000원
2) 동물용 의약품(동물별로 부과한다)		10,000,000원
5. 재검사 또는 확인검사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